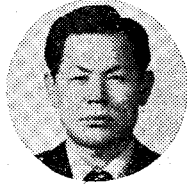


中華民國特許制度解說



〈上〉

關 拓 基

〈特許廳 研修擔當官〉

① 特許制度 略史

中華民國特許制度는 19世紀 外國貿易人들로부터 淸帝國政府에 壓力이 加해짐으로써 淸皇帝까지 거슬러 올라 追跡할 수 있다.

그러나 맨처음 관계된 規程은 商業的 獎勵를 위한 규정으로서 共和國이 탄생한 1911年 工業商業部가 13個條項으로 된 技術獎勵規程을 公布한 것이 初創期の 臺灣特許法이다.

現行 特許法은 1944年에 公布되었으며 이 특허법은 1959년과 1960년에 두번 改正되었고 主로 初期 獨逸特許法에서 由來하였다.

獨立된 特許專擔機關이 없고 經濟部 中央標準局內에 11個部門中에서 1個專利室이 擔當하고(特許·商標)있으며, 또 實用新案과 意匠은 臺灣省 建設廳에 委託處理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審判所 制度는 없고 특허를 申請하면 査定, 拒絕等 結果에 따라 異議申請, 再審査 등으로 紛爭以後 最終解決까지는 5段階라는 節次를 通過하여야 한다.

때로는 최종해결까지 3년이란 期間이 所要되는 수도 있다.

상표를 제외한 3가지종류의 특허제도가 있는데 그 名稱은 다음과 같다.

15年期間의 新發明(發明)

10年期間의 新型(實用新案)

5年期間의 新式樣(意匠)

上記의 기간은 出願日字로부터 起算된다.

② 特許審査

특허심사는 恒常 좋은 特許制度를 위한 가장 중요한

要因인 것이다.

標準局에서는 大學校와 研究所의 教授나 專門家인 442名의 時間制審査官을 가지고 있다.

시간제심사관을 採用하는 주된 이유는 표준국이 특허심사를 위한 機能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교수들이 이와같은 특허심사에 가장 資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특허제도를 강화하고 있기때문에 시간제가 아닌 常勤審査官으로서의 經驗있는 技術者를 補充하면서 자체의 심사단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금년말에는 10명의 상근심사관을 가질 것이며 또 3년 이내에 전심사관이 정상근무자가 될 것이다.

③ 改正特許法 主要骨子

현재의 특허제도는 미비점이 많아 全體制度를 진급히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될 특허법의 草案의 承認을 받기 위하여 立法院에 송부되어 있다. 改正特許法草案의 중요한 몇가지 點은 다음과 같다.

1) “産業上 價直있는 發明”이라는 것을 “産業上 應用이 可能한”으로 變更하였다.

2) 特許期間의 起算日을 “出願日로부터”라고 한것을 “特許賦與日로부터”라고 변경하였다.

3) 심사진행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하려는 것이다.

4) 公告期間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

5) 特許權者가 자기의 權利를 實施하는데 보다 많은 기간을 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대만내에서 자기 특허를 적당히 실시하기 전에 특허권자가 輸入한 生産品을 부당하게 價格을 올리는 경우에는 外國의 合法的인 製造業者로부터의 특허생산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정부는 保有한다.

6) 이후 예정된 新特許法에 의거하여 표준국으로부터 독립된 特許局이 될 것이며 전체 특허제도는 대폭적으로 適合하게 개정될 것이다.

끝으로 상표를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은 出願件數에 비하면 登錄件數가 너무나 적고 또 출원에서 등록까지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출원인과 각 기업체로부터 특허 정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④ 特許行政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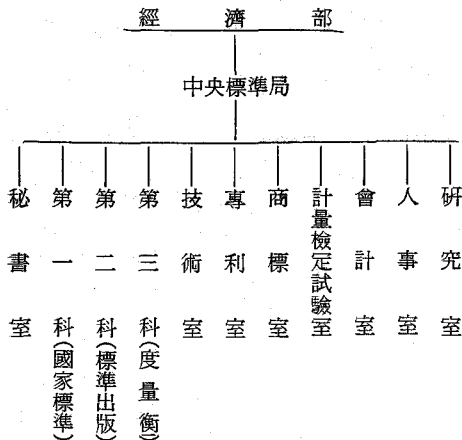
1. 現況

工業所有權制度는 發明, 新型, 新式樣의 3가지를 포함한 專利法과 商標法이 있다. 法體系와 各 法條文은 우리나라 公業소유권 4법과 類似한 점이 많다(前述한 發明, 新型, 新式樣은 우리나라의 特許, 實用新案, 意匠에 該當한다).

2. 所管官廳

工業所有權 業務는 中央政府의 經濟部에 屬하여 中央標準局 所管으로 되어있으나 每年增加되는 出원件數를 처리하기 위하여 工業所有權 4權利中 特許, 商標는 중앙표준국에서 취급하고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는 1950년 이후부터는 臺灣省建設廳에 그 業務處理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제부중앙표준국의 전리실은(특허업무 처리기관) 발명의 實體審査는 全部 外部에 심사물(대학교수, 國營工場, 技師等) 위탁하는 제도를 採擇하고 있으며 그 외부심사관은 公開하지 않는다. 商標審査에 限하여는 3명의 專任審査官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대만성건설청은 중앙표준국에서 위탁된 실용신안, 의장의 심사업무를 行하고 있으나 건설청 역시 그 심사는 중앙표준국과 마찬가지로 그 실제심사는 외부 심사

관에 의하여 行하여지고 있다.

國際關係로는 아직 WIPO 및 파리協約 등에 加入하지 않고 있다.

⑤ 工業所有權 關係法令

法律로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 一括하여 專利法과 商標法이 있고 각 법률에는 施行細則이 있다.

1. 專利法(1944. 5. 29. 公布)
2. 專利法施行細則(1947. 9. 26. 公布)
3. 商標法(1940. 10. 19. 公布)
4. 商標法(1972. 7. 4. 修正 公布)
5. 商標法施行細則(1948. 10. 11. 公布, 1973. 6. 13. 修正 公布)
6. 經濟部規程, 新式部 部品類別
7. 專利代理人規則(1953. 7. 18. 公布)
8. 著作權法(1928. 5. 14. 公布)
9. 著作權法施行細則(1928. 5. 11. 公布)
10. 技術合作條例(1962. 8. 9. 公布)
11. 投資獎勵法(1960. 9. 10. 公布)

⑥ 公報發刊

1.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公告와 異議申請, 審決, 行政院判決, 商標更新登錄 등의 公業소유권 관계의 公示事項은 표준관계의 公示事項과 같이 중앙표준국에서 每月 1日字로 發行되는 「標準」誌上に 公示한다.

2. 中央標準局 所藏圖書로는 韓國, 美國, 日本등 主要 世界各國의 特許公報가 所藏되어 있다.

⑦ 審査制度

1. 審査

심사는 6審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심사는 중앙표준국에서, 실용신안과 의장은 대만성건설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전임 심사관을 두지 않고 실제심사는 標準局審査擔當課長이 指定하는 외부기관의 專門家, 國營工場技師, 大學教授 등에 委託하고 있다.

(2) 審査結果 그 외부심사관의 보고에 따라 심사물 위탁한 과장이 결정하여 출원인에 審定書(査定書)를 통지한다. 이 심정서는 許可, 拒絕의 2종류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拒絕變告, 理由 通知制度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초심종결이 되는 셈이다.

(3) 이 初審終結審査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출원인은 30日 以內에 중앙표준국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이때에는 外部의 初審査官은 除斥이 되고 다른 外部審査官이 再審査한다.

(4) 上記再審査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경제부의 專利案件審核委員會에 또다시 最後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또다시 경제부의 訴願委員會에 訴願을 提起할 수 있다.

이 소원한 심사 역시 실제심사는 중앙표준국이 지정하는 외부심사관에 의하여 심사되나 前 2回째 審査, 第 3回째 審査에 關與한 외부심사관은 이 事件에는 제척이 되고 새로운 외부심사관에 의하여 재심사된다.

(6) 經濟部 訴願委員會의 심사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行政院에 또다시 再訴願할 수 있다.

(7) 行政院決定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最後로 행정원에다 또다시 行政訴訟를 提起할 수 있다.

2. 公 告

前項의 심사(재심 포함)에서 등록할 것으로 심정된 것은 건설청에서 심정된 실용신안, 의장도 전부 중앙표준국에서 發刊되는 「標準」誌에 其他 公示事項과 같이 公고된다.

3. 異議申請

(1) 公고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公告日로부터 6개월 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심사는 재심사에 準하여 심사된다.

(3) 출원인에게는 答辯의 機會를 준다. 答辯書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출원이 成立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審査內容

1. 特 許

(1) 特許要件

가. 最先의 출원일 것, 同日字出願은 相互協議 決定한다.

나. 新規性에 대하여는 다음 各項과 같다.

1) 世界的으로 公知가 아니며 국내에서로 公用된 것이 아닌 것

다만 국내의 研究發表에 있어서는 6개월이란 例外規定이 있다.

2) 外國政府에 출원한 것에 대하여는 그 出願日로부터 1年 以內일 것

3) 特許出願前에 秘密裡에 大量生産하지 않을 것

4) 政府認可의 展覽會出品後 6個月 以內일 것다. 實用에 適合하고 工業的 實施段階에 있을 것다. 다음의 不特許事由에 該當되지 않을 것

1) 化學物質

2) 飲食品및 嗜好品

3) 醫學品및 그 調合

4) 發明品の 사용이 法律에 違反되는 것

5) 公序良俗에 反하는 것

마. 其 他

1) 用途特許는 원칙적으로는 物質에 準하는 것으로 보고 특허되지 않거나 明文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사관의 인정에 의하여 특허되는 수도 있다.

2) 또 化學的方法이 單純한 Blend工程으로 成立되는 경우에는 前項에 準하여 특허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 公告期間

중앙표준국에서 발간되는 「標準」誌申 公고한다.

사. 異議申請

公告期間 동안에는 누구든지 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存續期間

출원일로부터 15年

<계 속>

